

MORSE 전신기능 인정규정

제 1 장 목 적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정관 제4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Morse 전신기능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Morse 전신술의 향상과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전신기능 인정

제 2 조 (Morse 전신기능 인정 시험의 시기 및 장소)

- ① Morse 전신기능 인정시험(이하 “인정시험”이라 한다)은 연 2회 연맹 또는 각 지역본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정기시험과 필요한 경우 행사장(필드데이, 교육장, 정크시장 등)에서 실시하는 수시 시험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각 인정시험은 연맹 전신위원회 위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 ③ 전신위원회는 매년 인정시험에 관한 연간계획을 KARL 지에 사전 공고한다.
- ④ 지역본부 및 클럽 등 단체에서 10인 이상의 인정시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제 3 조 (Morse 전신기능 인정 단위) Morse 전신기능 인정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Morse 전신 국문
2. Morse 전신 영문

제 4 조 (인정시험의 신청) 정기인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10일전까지 소정의 서식(별지 제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연맹 또는 지역본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 당일 시험 장소에 제출한다.

제 5 조 (인정기준) 수신 속도와 시험시간 및 최저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단 및 급별 수신 속도 등은 다음과 같다.

구분	5급	4급	3급	2급	1급	1단	2단
수신속도	25	40	60	70	80	100	120
시험시간	1 분						
구분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수신속도	130	140	150	160	170	180	190
시험시간	1 분						

2. 수신 속도는 PARIS 방식에 의한 통신 속도(자/분)로 한다
3. 수신은 필기 외 타자, PC 또는 속기방식으로 할 수 있다.
4. 단 이상은 1분간씩 3회 수신하여 이중 유리한 수신문 1부를 정서하여 제출한다. 이 경우, 영문은 대문자로 정서하여야 한다.
5. HST 세계대회 5위 이내 입상자는 9단으로 인정한다.

제 6 조 (채 점) 제출된 수신문에서 오자, 탈자, 자체 불명료자 등이 5자 이내일 경우에만 합격 처리한다.

제 7 조 (인정증명) Morse 전신기능 인정을 받은 자에게는 연맹 이사장의 인정증과 메달 또는 패를 교부한다. 단, 패는 3단 이상에 준한다.

제 8 조 (전신인정시험의 면제) ①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로서 1년간 국내외 각 200국 이상의 전신교신을 완성하여 이의 Log를 제출한 자는 2단으로 인정한다.

②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로서 1년간 국내외 각 200국 이상의 전신교신을 완성하여 이의 Log를 제출한 자는 1단으로 인정한다.

③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로서 1년간 국내외 각 200국 이상의 전신교신을 완성하여 이의 Log를 제출한 자는 1급으로 인정한다.

④ 국내교신인 경우 동일 날자가 아니면 중복 국도 인정한다.

제 3 장 고속전신 선수선발

제 9 조 (목 적) 본장은 정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IARU에서 주최하는 HST세계 선수권 대회의 기본규칙을 기초로 하여 고속전신(HST : High Speed Telegraph, 이하 "

고속전신“이라 한다)의 국제경기대회에 파견하는 선수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전신의 보급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0 조 (선발 일정) ① 선수선발 경기는 고속전신 세계 선수권대회가 개최되는 전년도에 2회차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단, HST세계선수권 대회의 개최시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1회차 선발경기는 제1항의 년도 6월에 각 지역본부 주관으로 연맹 전신위원 임회하에 실시하고, 2회차 선발경기는 연맹 전신위원회 주관으로 1회차 선발 경기에서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동년 8월에 실시한다.

③ 각 지역본부장은 선발경기 1개월 전에 소속 회원에게 경기 참여를 홍보한다.

제 11 조 (선발 인원) 선발되는 선수의 인원은 연맹의 정 회원으로서 최고 12명 이내로 하되, 팀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명 이내의 시니어 (경기대회연도의 1월 1일 현재 20세를 초과하는 남성)
2. 2명 이내의 여성 시니어 (경기대회연도의 1월 1일 현재 20세를 초과하는 여성)
3. 2명 이내의 주니어 (경기대회연도의 1월 1일 현재 20세 이하의 남성)
4. 2명 이내의 여성 주니어 (경기대회연도의 1월 1일 현재 20세 이하의 여성)
5. 2명 이내의 OT (경기대회연도의 1월 1일 현재 45세 이상의 남성)
6. 2명 이내의 여성 OT (경기대회연도의 1월 1일 현재 45세 이상의 여성)

제 12 조 (선발 경기내용) ① 선수선발의 경기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분간 문자메시지를 수신한다. 최초의 속도는 PARIS 방식으로 1분당 100부호.
2. 1분간 숫자메시지를 수신한다. 최초의 속도는 PARIS 방식으로 1분당 150부호.
3. 1분간 혼합메시지를 수신한다. 최초의 속도는 PARIS 방식으로 1분당 100부호.
4. 1분간 문자메시지를 송신한다. PARIS 방식으로 가능한 최고의 속도와 품위.
5. 1분간 숫자메시지를 송신한다. PARIS 방식으로 가능한 최고의 속도와 품위.
6. 1분간 혼합메시지를 송신한다. PARIS 방식으로 가능

한 최고의 속도와 품위.

7. 전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아마추어 무선수신 실기테스트의 경기.

8. 전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Pile -Up 무선수신 실기 테스트 경기.

② 제①항 제7호 및 제8호는 전신위원회의 판단으로 생략할 수 있다.

제 13 조 (선발 방식) 선수 선발의 방식은 IARU의 HST세계 선수권대회 및 개최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내환경에 의하여 조정 시행할 시에는 1개월 전에 연맹의 월간지 또는 웹사이트(Web Site)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제 14 조 (시 상) HST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에게는 연맹의 심사를 거쳐 시상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① 이 규정은 1999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2004. 5. 22. 제5조, 제7조, 제8조의 개정사항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4. 5. 22. 이사회 의결)

제 2 조 (경과조치 및 개정) ① 2000. 2. 12. 제3조, 제5조, 제6조 개정

② 제3조 제1항의 Morse 전신 국문은 국문 수신 프로그램 개발 후 시행한다.

③ 2003. 1. 12. 제2조 제②항, 제③항 개정

④ 2004. 5. 22. 제1조, 제5조, 제7조, 제8조 개정과 제목의 편수 삭제와 제1장, 제2장의 장 분류 및 부칙조문 개정

⑤ 2004. 7. 10. 제3장 고속전신 선수선발 제9조 내지 제14조 신설